

이천시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999. 9. 1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년 8월 21일 이천시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1999년 8월 24일
- 다. 상정일자 : 제34회 이천시의회(임시회)
제1차(99. 8. 31) 산업건설위원회 상정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박재한)

가. 제안이유

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법 주정차에 대한 차량의 견인에 관한 제도가 상위법과 중복하여 규제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O 차량의 견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(안 제2조)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철호)

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제2조의 견인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 규정된 사항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만장일치)

7. 기타사항 : 없 음